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8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
❍ 회부일자: 2025년 9월 4일 회부

❍ 상정일자: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9월 4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-793호,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· 운용 합리성 제고」 권고 통보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제3항)

- (기존) 설치하여
- (변경)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

❍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(안 제7조제2항)

- (신설)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❍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관리 강화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(신설)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 · 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  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  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· 의결 내용
  3. 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변경사항 등

❍ 평창군 자치법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(안 제12조)

- (기존)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
- (변경)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···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❍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
❍ 제안일자 : 2025. 8. 25.

❍ 회부일자 : 2025. 9. 4.

❍ 상정일자 : 2025. 9. 4.

2. 제안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-793호,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권고 통보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제3항)

- (기존) 설치하여

- (변경)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으로

❍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(안 제7조제2항)

- (신설)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❍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관리 강화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(신설)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 · 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  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  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· 의결 내용
  3. 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변경사항 등

❍ 평창군 자치법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(안 제12조)

- (기존)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
- (변경)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정별 재원, 용도를 정하며 이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[1]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제6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에서 **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의 의무를 명시**함.

❍ 안 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에서 **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**

1)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, 국민권익위원회, (2023. 10. 23.)
○ 조치사항
-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
-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

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보고와 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❍ 안 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에서 변경된 평창군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함.

(기존)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

(변경)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5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으로,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의무 명시,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의 심의 강화,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내역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금의 공공성과 수익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(발췌)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3 - 793호

의 안 명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

대상기관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자치단체

의 결 일 2023. 10. 23.

주 문

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방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Ⅳ. 개선방안

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

□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

○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·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

< 예시: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제○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○○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	제○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○○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

□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

○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규정
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별 적립요건 해당 여부,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 보고·심의

※ 조례 개선안(예시)는 개선방안 [4] 참조

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

□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

○ (심의내역)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

- 매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, 심의·의결사항 등 심의내역 관리 규정 마련

○ (예치현황)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

- 기금운용계획안 수립, 기금운용계획 변경,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심의 시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·포함

< 예시: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제○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○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	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	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	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	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<신 설: 개선방안 3(p.27) 관련>	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○○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	6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○○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<신 설>	② 제①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

<신 설>	야 한다.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 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455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-793호,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권고 통보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: 안 제6조제3항

1) (기존) 설치하여

1) (개정)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

나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: 안 제7조제2항제5호

1) (신설)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다.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관리 강화 :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

1) (신설)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라. 평창군 자치법규(규칙)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: 안 제12조

1) (기존)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

(개정)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5. 5. 9. ~ 2025. 5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750호, 기획예산과-8200(2025. 5. 30.)]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6951(2025. 5. 2.)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6951(2025. 5. 2.)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7342(2025. 5. 7.)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0662(2025. 10. 9.)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2841(2025. 8. 18.)

평창군 조례 제   호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등으로기금”을 “등으로 기금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운영ㆍ관리하기”를 “운용ㆍ관리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설치하여”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

제12조 중 “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”을 “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　　　행	개　정　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생　략)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 1. (생　략)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. ~ 5. (생　략) ④ (생　략)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 등으로 기금 ------------------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,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 ② (생　략) 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	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용·관리하기 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---.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생 략)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 5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.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· 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·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두 기
연락처	(033) 330 - 2220